



건설업계의 현주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원도급업자가 공사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전문건설협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30일 이하의 단기어음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한다는 업체는 4.6%에 불과하고, 31~90일 이하의 중기어음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결제한다는 업체는 전체의 66.9%로서 과반수를 넘고 있다. 심지어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한다는 업체도 21.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전문업체 공사비 현금결제 확대 절실

전문건설업체 자금악화사정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방안은 공사대금의 현금수령이다. IMF 사태를

겪고 난 지금도 전문공사의 공사대금은 현금결제보다 어음결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건설협회가 최근 회원사 985개사 29개 업종을 임의 추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공사대금의 어음결제 비중은 원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41~60% 수준이라는 업체비율이 31.2%, 61~80% 수준이라는 업체비율이 18.9%, 80%를 초과한다는 업체비율이 13.6%로 나타났다.

공사대금의 현금지급 비중이 높아 20% 정도만 어음으로 결제한다는 업체비율도 15.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원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대체로 현금지급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응답업체의 57%의 업체가 공사대금을 현금결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하도급의 경우는 어음결제 비율이 41~60% 수준이라는 업체비율이 가장 높은 31.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61~80% 수준이라는 업체비율이 24.2%, 80% 수준을 초과한다는 업체비율도 17.7%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어음지급비율이 20% 이하라는 업체비율은 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현금지급에 대해서는 조사응답업체의 67.3%의 업체가 공사대금의 60% 정도만 현금형태로 수령되는 것으로 지적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나



대한건설신문사
발행인 유경열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 등의 현금성 지급형태로 공사대금을 결재한다는 업체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조사 응답업체의 80.7%의 많은 업체가 이런 현금성 결재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원·하도급의 경우를 비교하면 어음지급비율이 원도급의 경우보다는 하도급의 경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음지급비율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원도급의 경우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를 느낄 수 있으며, 하도급의 경우도 어음지급비율이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공사대금의 어음지급비율이 축소되는 추세는 바람직한 경향이긴 하지만 이 추세가 공사량의 대폭적인 감소현상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난 현상일 때는 어음지급비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져야 할 것이다.

전문공사의 대금지급방식이 어음결제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공사대금조 수취어음은 결제 만기일이 3개월 이상의 장기어음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원도급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수취만기일이 30일 이하라는 업체는 전체의 11.6%, 31~60일 이하라는 업체는 33.6%, 61~90일 이하라는 업체는 33.3%, 91~120일 이하라는 업체는 17.1%이며, 120일을 초과한다는 업체비율도 4.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30일 이하의 단기어음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한다는 업체는 4.6%에 불과하고, 31~90일 이하의 중기어음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결제한다는 업체는 전체의 66.9%로서 과반수를 넘고 있다. 심지어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한다는 업체도 21.5%로 높게 나타났다.

공사대금을 장·단기 어음으로 결제하는 현상은 하도급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게 지적되었다.

즉, 30일 이하의 단기어음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한다는 업체는 전체의 2.2%로 미미하고, 31·90일 이하의 중기어음에 의존하는 업체는 전체의 47.9%로 거의 과반수에 접근하고 있으며,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고 있다는 업체는 전체의 49.8%로 역시 과반수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120일을 초과하는 초장기 어음으로 결제한다는 업체도 전체의 7.3%로 나타났다.

이런 장기어음에 의한 결제추세를 살펴보면, 원도급의 경우 120일 이상의 초장기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하는 사례를 지적하는 업체비율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61~90일 이하의 중기어음 결제 사례를 지적하는 업체비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하도급의 경우는 31~90일 중기어음의 결제 사례를 지적하는 업체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역시 초장기 어음의 결제 사례를 지적하는 업체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이같이 전문공사의 공사대금조 수취어음이 장기어음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문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이 공사수주로 말미암아 호전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색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공사의 공사대금이 장기어음으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공사대금의 법정기일 내의 지급실태를 보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원도급업자가 공사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하도급자간의 신의 성실한 생산관계로
발주자는 설계내용대로 전실한 시공과정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시공기능을 전담하는 전
문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 기성금 장기여음 결제 후 유증 심각

전문공사의 기성금에 대한 수령실태는, 대체로
기성신청주기는 원도급의 경우 45일 정도이며 하도
급의 경우는 50일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도급의 경우 기성신청주기
가 1개월 단위라는 업체비율은 조사응답업체의
60.9%이며, 1~2개월 단위라는 업체비율은 17.7%
이고, 2~3개월이라고 지적하는 업체비율은 17.5%
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기성금
을 신청한다는 업체비율은 조사응답업체의 96.1%
로 나타났다. 그러나 3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기성금의 신청사례도 있으며, 조사응답업체의
3.9%에 이르고 있다.

이를 하도급의 경우에서 보면, 기성금의 신청주
기가 1개월 단위라는 업체비율은 조사응답업체의
56.3%이고, 1~2개월 단위라는 업체비율은 22.0%,
2~3개월 단위라는 업체비율은 16.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3개월 미만의 기간 단위로 기성금을
신청한다는 업체비율은 94.3%로 나타났다. 이를
원도급의 경우와 비교하면, 하도급공사에서 기성금
의 신청주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현상은 직불제의 영향에 힘입은 것으로 추
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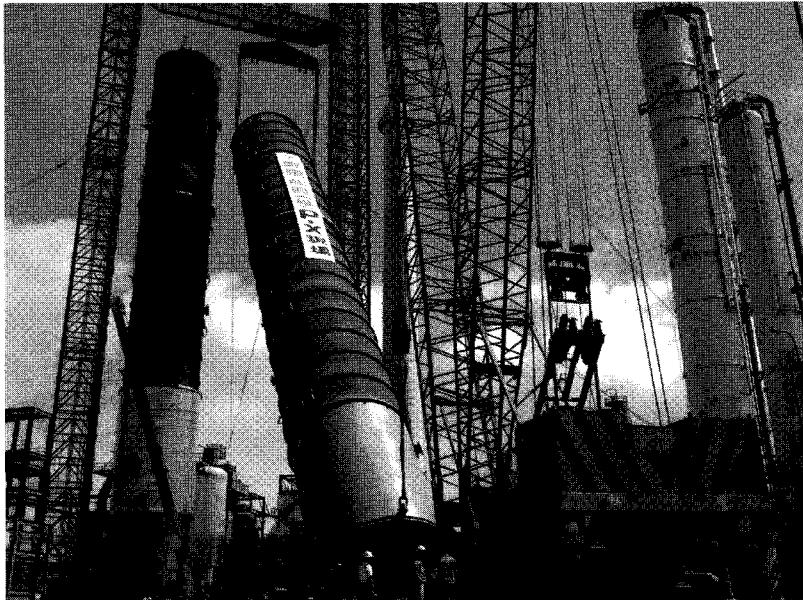
물론 건설공사의 기성금 신청은 공사규모와 공사
기간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기성금의 신청주기의
장·단기에 따라서 기업의 자금회전 사정은 달라지
고 있다.

그러므로 기성신청주기는 단기적일수록 기업의
자금회전을 호전시키는 요인이 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도급 공사의 경우 기성신청

후 현금 형태의 기성금 수
령까지의 소요시일이 10일
이내라는 업체는 조사응답
업체의 30.3%, 11~20일
이내라는 업체는 26.3%,
21~30일 이내라는 업체는
25.8%로 분포되어 있으며,
30일을 초과한다고 지적하
는 업체도 전체의 17.6%에
달하고 있다.

대체로 원도급의 경우에
는 기성신청 후 1개월 이내
에 기성금이 수령되고 있
다는 업체가 82.4%로서,
대세로 나타났다.





이를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서 보면, 기성신청 후 현금 형태의 기성금 수령까지의 소요시일은 1개월 정도가 68.5%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급공사의 기성금 수령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원·하도급자간의 원만한 타협을 통하여 적절히 조정되어 결정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원도급 공사의 경우, 기성금이 어음 형태로 지급된 후 현금화 기간을 살펴보면 현금 수령 때보다도 다소 장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성신청 후 10일 이내에 현금화에 11~20일이 소요된다는 업체비율은 11.6%, 21~30일이 경과하여 현금화한다는 업체비율은 31.0%, 그리고 31~60일이 경과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는 업체비율은 23.4%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기성신청 후 30일 이내에 어음지급 기성금을 현금화한다는 업체비율은 55.7%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1개월을 초과한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기성금의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업체비율도 44.3%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하도급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성금이 어음결제방식인데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현금화한다는 업체비율은 6.5%, 현금화에 11~20일 소요된다는 업체비율은 8.3%, 현금화에 21~30일 소요된다는 업체비율은 39.8%, 그리고 31~60일이 경과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업체비율은 21.2%로 각각 나타났다.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어음지급형태의 기성금의 현금화 기간은 대체로 1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하는 업체비율은 54.6%로서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1개월을 경과하여 기성금의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업체비율은 45.4%로 과반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어음지급의

기성금의 현금화 기간은 원도급 공사의 현금 수령의 경우보다 장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성금 지급에 있어서 현금보다 어음 형태일 경우에는 소요시일이 더욱 장기적인 현상은 현금보유상태가 여의치 못할 때는 어음결제기일을 장기간으로 잡아 놓을 수 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현금 보유가 충분한 때는 기성신청 후 기성금의 수령까지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자금수급계획의 스케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기성금의 어음지급일 경우에는 원·하도급을 막론하고 이의 현금화 소요기간은 IMF사태 직후에 비하여 장기어음지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 파악한 하도급 공사의 공사대금결제방식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나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과 같은 현금성 결제 형태가 적지 않게 활용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조사응답업체의 68.4%의 업체가 이런 현금성 결제시 적용하는 대금수령기간은 대체로 1개월 이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12.1%의 업체는 10일 이내에 공사대금이 결제된다고 대답하고 있고, 15.9%의 업체는 20일 이내에 현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조사응답업체의 31.6%의 업체는 현금성 결제에 있어서도 1개월 이상 현금수령기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대답했다.

이중 4.5%의 업체는 현금성 결제라도 2개월 이상 대금수령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1.5%의 업체는 3개월 이상 대금수령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대답했다.